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5-6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주 문

1. 주민참여예산의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
2.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수행할 것.
3.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지원과 돌봄을 담당할 성북구청의 유관 기관들에 대하여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이 유

I. 권고의 배경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예산불용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2015년 1월 14일 개최된 25차 정기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권고 제20호). 이에 따라 구성된 “성소수자 예산 불용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권고’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통해 제출하였다.

II. 권고의 주요 내용

우리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의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

주민참여예산을 불용할 때는 일관된 절차와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이 담지하고 있는 소수자 차별금지, 참여 등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훼손될 수 있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구청이 지원해야 함.

둘째, 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수행할 것.

이번 불용 사태는 “동성애는 죄악이다”는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이 행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게 되었음.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그들의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신앙을 근거로 한 요청에도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반되지 않을 때 존중되는 것이며, 이번 사태처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할 것을 행정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중

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됨. 이와 같은 원칙은 종교적 신념뿐 아니라 비종교적일지라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모든 표현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임.

특히, 이번 사태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위반된 현상으로 판단함. 현대국가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수천 년의 종교학살과 종교탄압을 거치면서 현대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 이르게 된 합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구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종교적 신념을 포함해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주장과 표현이 어떠한 배경으로도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이에 대한 구청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구청장을 포함해 행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간부 특별교육 1회와 전체 직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함.

셋째,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것. 성북구 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야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할 것임. 성북구 인권센터가 이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2015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

또한, 성북구 인권센터는 앞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지원과 돌봄을 담당할 성북구청의 유관 기관들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Ⅲ.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5. 27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